

춘천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505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18. 5. 2.

판결 선고 2018. 6. 27.

제 1 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3176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동일한 청구취지로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주위적,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F은 이 사건 지분 중 1/3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F은 이 사건 지분 중 1/3(E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175,000,000원에 인수한다. F은 E 지분 명의 이전

후 공유자인 D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지분분할이 확정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는 F의 대표이사이었고, 현재는 F의 대표자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6. 27.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E가 가진 지분 6분의 1의 등기를 이전받기로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약정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원고는 당초 피고와 F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2016. 6. 27.자 피고 답변서는 피고뿐만 아니라 F으로 부터 함께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F 등의 공동 명의로 제출한 것인 점, 피고는 2016. 12. 6.자 준비서면 이래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F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F이 아닌 피고 개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분 소유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J'를 '갑'으로, 지분 매수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B'을 '을'로 칭하고, 그 말미에 각 당사자를 위와 동일하게 기재한 다음 각각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그 기재 형식에 비추어 '갑'과 마찬가지로 '을'은 피고 개인이 아닌 F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한 점,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시 F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서 산지개발허가를 받아 골재채취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F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이후 F이 아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와 F 및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를 당초 F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를 변경하지 않고도 그 이행의 상대방을 제3자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개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F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지분 중 1/3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약정서에는 F이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마.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0.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이후 무효 또는 해제되어 그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판사 김보현, 판사 유재영